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259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나223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2599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 2018. 12. 18.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2. 7. 13. 접수 제8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판사정희철

별지